

## ( 기 관 명 )

문서번호

시행일

받음

제목 **토지 용도 ·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**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5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라 사후관리 중인 폐기물매립시설이 있는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.

- 아 래 -

매립시설 설치자	
매립시설 소재지	
이용용도	
이용기간	

시·도지사  
유역(지방)환경청장

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 )

팩스번호( )

/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